

금 九 = 년도 징병적령자에게 적령자임을 통
지하는 동시에 징병적령계를 좌기 각안에
의하여 수리코저 하오니 재결하여 주심을
망청하나이다

안

공고

서울특별시공고 제 337호
관기 9 = 년도 징병적령자는 좌기와여히 징

병적령 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니 해당자 전원
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소정 기간 내에 이를
신고 하여야 한다
우공고 함

단기 49년 11월 일

서울 특구별시장 허정

一 요 신고 대상자

기
저자 단기 49년 11월 1일 간 출생자
단기 49년 11월 1일 간 출생자

二 신 고 자

본인 또는 조주 및 세대주와 가
사담당자

三 신 고 기 간

자단기 四九년 十월 十五일 (十七일간)
지단기 四九년 十월 十五일
소환구청 호적병무과

四 신 고 장 소

五 신 고 요 령

“각동사무소에서 징병적령신
고용지를 받은 후 소정사항을

기재하고 증명사진(二매)을 첨부
하여 동장경유 구청장에게

六
기

화

신고한다
의 징병적령 신고자에 대하여는
즉시 징병적령 신고 증명서를
교부한다

四九 = 년도 징병적령자로서
취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
징병적령 신고를 요치않는다
국군의병적에 편입된 자

안

(2) 전호의 자로서 병역이 면제된 자
(3)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복무

중인자

(4) 지원에 의하여 현역을 마친 자

또는 현역 면제 및 예비역
을 면제 한 자